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06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오세희 · 강준현 · 박희승
강경숙 · 임미애 · 박균택
민병덕 · 김기표 · 이주희
윤후덕 · 안도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지연을 방지하고 거래상 지위 격차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을 월 마감 기준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논란, 쿠팡 관련 분쟁 등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시장 내 협상력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업자는 대금 지급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전 자금 부담 증가와 경영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할 경우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 또는 해외 명품업체까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되어 제도의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충분히 집중되지 못하고 정책 취지와 달리 과도한 수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며,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자금 유통 필요성이 높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0일 이내”를 “20일 이내(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등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p> <p>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1. ~ 3. (생략)</p> <p>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p> <p>① ----- ----- ----- -----<u>15일</u>----- ----- ----- -----<u>. 다만,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등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u>20일</u> <u>이내(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u>----- ----- ----- -----<u>. 다만,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의</u></p>

<p>③ · ④ (생략)</p>	<p><u>경우에는 40일 이내(납품업체 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 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 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